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와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해당한다) 및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쪽) 사본”을 “해당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를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을 “이에 동의하지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7(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수금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9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대상구분(상이등급)	보훈번호	
	() ()		
	고엽제 후유증환자 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관련 사항	성명	생년월일
	관리번호	장애정도
	등록일	사망일 ※ 사망자만 해당
	보상신청 기간	년 월 ~ 년 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부양의무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 여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부양의무자: 신청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통이용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자동차등록증 27. 차상위계층확인서 28.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0. 자활근로자확인서 31.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3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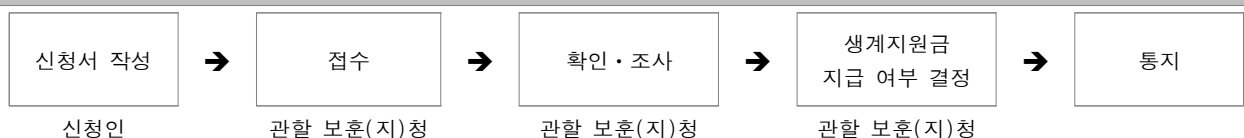
- 1.본인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본인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환수금 분할 신청 내용	총 환수금액 원	일시납부 금액 원	분할납부 신청 금액 원	분할납부 횟수 회	월 납입일 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후단 부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7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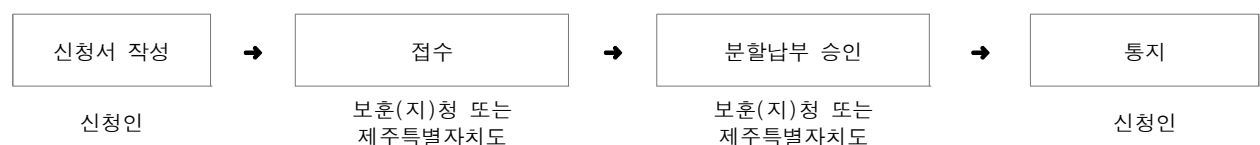
1. 작성방법

- 가.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①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①총 환수금액 = ②일시납부 금액 + ③분할납부 신청 금액)
- 나. 환수금 분할 신청내용의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 반납해야 할 금액이 ①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②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③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후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8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 ----- ----- ----- ----- ----- ----- ----- ----- ----- ----- 해당하는)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 ----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 해야 ----- . ----- -- 이에 동의하지 않는 ----- ----- ----- 해야 -----.
<신 설>	제8조의7(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9서식의 환수금 분
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
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